

# 맹견을 키우고 계시나요?

## 맹견과 함께할 때 꼭! 지켜야 할 안전조치

-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!
-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·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.
- 위반 시 과태료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


-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이 안돼요!
- 위반 시 과태료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
#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!

•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!

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	그 외
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	매년 3시간

- 위반 시 과태료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- 교육 이수 방법은?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(apms.epis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해요!

# '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

-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 ·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!
- 보험상품은 1월 중 출시 예정



# 동물 관련 영업\*에 종사하시나요?

- 신규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!
- \* 여기서 동물 관련 영업이란? 동물판매업·동물수입업·동물생산업·동물전시업·동물위탁관리업·동물 미용업 그리고 동물운송업을 의미해요!

영업을 하려는 자	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
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	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

• 교육 이수 방법은?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(apms.epis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해요!



# 지켜주면 우리 모두

더욱 행복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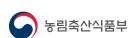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(







# 우리 집 사람들이,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?



2개월령 이상의 개는 <mark>동물등록</mark>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. (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# 등록방법은?

#### 동물등록은 이렇게!

시·군·구청 및 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, 동물보호센터 등)에서 접수하세요



#### 변경신고는 이렇게!

- 소유자 변경은?

시·군·구청에「동물보호법」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[동물등록변경 신고서]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

-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, 동물의 유실·사망시에는? 시·군·구청에「동물보호법」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[동물등록변경 신고서]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,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 qo.kr)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

#### 변경신고란?



#### 10일 이내 신고

동물을 잃어버렸을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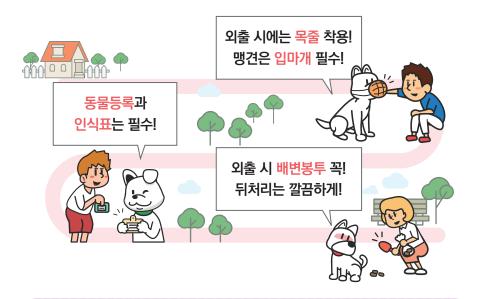
## 30일 이내 신고

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(주소, 전화번호)가 변경되었을 때,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, 등록 동물이 사망 했을 때,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 등을 잃어 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



#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펫티켓!

### 반려인의 법적 의무



## 비반려인의 매너



···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동의 구하기!



큰소리로 갑자기 다가가면 반려동물도 깜짝!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과잉행동, 자제하기!



노란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! 노란리본을 한 강아지는 예민하거나 훈련 중인 강아지라는 표시에요~ 이 작은 배려의 표시를 꼭 기억해주세요.